# 뉴질랜드의 외국인 투자 및 자원 개발 관련 법제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안완기 변호사

## Ⅰ. 뉴질랜드 국가 현황

1.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인구가 4백만 명으로 남한 면적 2배 가량의 국토를 보유하고 있다. 인구당 GDP(구매력평가 기준, PPP)는 US$27,000[1] 정도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작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뉴질랜드의 산업은 본래 농산물 위주였으나 교육, IT, 원예(horticulture), 와인(wine), 영화(film) 등으로 주력 산업을 다방면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농업의 규모는 전체 56%를 차지). 뉴질랜드의 무역 면은 trans-Tasman marketplace, 즉 호주-뉴질랜드 간 시장의 무역이 아직까지 대세이며, 호주는 물론 중국과도 FTA를 체결한 바 있다. 뉴질랜드에 대한 가장 많은 투자자금의 유입은 호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2], 대호주 수출이 물량 및 금액 면에서 가장 크고, 그 뒤를 중국이 잇고 있다(한국은 2012년 2월 현재 5번째 규모의 무역국).

3.뉴질랜드는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 관세(tariff)도 적고, 관세율도 낮은 편이다. 정부 독립기관인 준비은행(Reserve Bank)이 중기적인 관점(medium term)에서 인플레이션 율을 1-3% 내로 조절하며, 노동당(Labor)과 국민당(National), 주로 2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121명의 국회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이 현 John Key 수상의 행정부에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두 주요 정당의 정책 성향도 시장원리에 충실한 편이며, 다만, 경쟁법상 시장 지배에 관한 규제와 최소임금제, 보건, 안전 정책 등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2004년 1월에 공식적으로 뉴질랜드 대법원(Supreme Court)이 영국 런던에 위치한 추밀원(Privy Council)을 대신해 뉴질랜드 내 최고 법원이 되었고, 이 밖에 환경법원(Environment Court),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등의 특수 재판소(tribunals)들이 존재한다.

---

1) 국제통화기금(IMF)의 2011년 산출 기준 (한국 25위, 뉴질랜드 32위),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0년 산출 기준 (한국 30위, 뉴질랜드 29위).

2) 2011년 3월 31일 당시.

4.경제적인 측면에서 최근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있으며, 상법(the Commerce Act 1986), 공정거래법(the Fair Trading Act 1986), 소비자보호법(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등이 자국민 산업 및 이익 보호를 위해 입법되었다.

5.뉴질랜드에 대한 해외투자를 할 경우, 투자자의 유한책임 희망여부, 관련 사업의 본질과 규모, 공공자금의 필요 및 세금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토지나 자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해외투자법(the Overseas Investment Act), Takeovers Code("Code companies"[3]에 적용), 상법(the Commerce Act) 등을 유의해서 검토해야 한다.

# Ⅱ.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 제도 일반

## 1. 개요

뉴질랜드 투자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은 뉴질랜드의 해외 투자 제도, 회사 설립 방법, 조세제도, 환경법 관련 규제, 부동산 구입 관련 규제, 고용 관련 규제, 공정거래 관련 규제 등이다.

## 2. 외국인의 자산 취득에 대한 규제 - 해외 투자 제도 (Overseas Investment Regime)

### 가. 개요

뉴질랜드에서 외국인이 대규모 영업자산, 민감 토지, 농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투자사무소(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어떤 경우 이러한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 절차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겠다.

### 나. 관련 법령

뉴질랜드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영업자산, 토지, 지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외투자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의 면제에 대해서는 해외투자규정(Overseas Investment Regulations 2005)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민감토지의 이용·거래 등과 관련된 해외투자의 경우, 동의를 필요로 하는 토지에 따라 환경관리법, 보전법, 보호법 등도 적용될 수 있다.

3) 50명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거나 stock exchange에 등재된 회사.

다. 주요 내용

뉴질랜드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하면, 외국인(overseas person)으로 분류되는 자의 특정 거래는 해외투자사무소(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위 법에 의하여 외국인(overseas person)으로 분류되는 자는, 뉴질랜드 시민 또는 거주자가 아닌 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혹은 비슷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파트너쉽(partnership), 법인(body corporate), 합작투자(joint-venture), 또는 신탁(trust) 등도 포함된다. 특히, 뉴질랜드 외부에서 설립된 회사나 외국인이 지분이나 이사회(governing body)의 지배권/의결권을 25%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해외투자법이 적용되는 외국인의 특정 거래로는 (1)대규모 영업자산(significant business asset)의 취득, (2) 민감하거나 특수한 토지(sensitive or special land)의 취득, (3) 농지(farm land) 취득 등이 있으며, 이하에서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1) 대규모 영업자산의 취득[4)]

외국인이 영업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이 (여러 번에 걸친 관련 거래 등을 포함) NZ$100M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설립하는데 지출된 총 비용이 NZ $10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OIO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주식 취득의 경우, 주식 인수가액이 NZ$100M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가치가 NZ$100M을 초과하는 회사(25% 이상의 통제권을 갖는 자회사의 자산 가치를 포함)의 25% 이상의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또는 25% 이상의 통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OIO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기존의 보유한 지분/통제권을 포함하여 지분 소유 또는 통제권이 25% 이상으로 증대되는 경우에도 OIO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민감 토지

외국인이 관계 법령에 의해 민감 토지로 분류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OIO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토지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갖는 회사를 매입하는 외국인(그 고용인 포함)도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래를 하는 경우  OIO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대상 회사 25% 이상의 통제권 또는 지분 취득, 기 보유 지분/통제권의 25% 이상으로의 증대, (나) 대상 회사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취득한 결과 대상회사가 외국인(overseas person)으로 분류되는 경우. (다) 민감 토지에 대한 수익기간(갱신권한 포함)이 3년 이상인 외국인의 투자 민감 토지 구역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이 매우 상세하게 정의되어있으며, 토지 취득 시 그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요구된다:

---

4) Doing Business in New Zealand, Chapman Tripp, 영업자산취득(Business assets acquisitions) 부문 4 페이지 참조.

(가) 5헥타르가 넘는 (상업, 산업, 거주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비도시 지역; (나) 해안 및 해저(foreshore or seabed) 지역; (다) 특정된(Certain named) 섬의 0.4헥타르를 초과하는 토지; (라) 남·북섬을 제외한 모든 섬의 토지(면적 관계 없음); (마) 0.4헥타르를 초과하는 일정 지정 지역(예: 보전법(Conservation Act 1987) 지정 구역, 호수 바닥, 환경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 또는 사적지 관련법(Historic Places Act 1993)에 따른 유산(heritage)명령/조건이 적용되는 토지, 사적지 관련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신청이 가능한 마오리(Maori)족의 신성한 지역(wahi tapu)이나 역사적 장소; (바) 0.2헥타르를 초과하는 해안과 접하는 토지; (사) 0.4헥타르를 초과하는 보호법(Reserves Act 1997) 지정 보호구역.

한편, 경우에 따라 민감한 토지로 분류된 지역에 인접한 토지도 함께 민감 토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 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특수 토지

해안, 해저, 또는 하천 및 호수 바닥 토지를 특수토지라고 한다. 만약 투자자가 취득하려는 민감 토지에 특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민감토지 중 특수 토지 부분이 기존 소유자에 의해 먼저 정부에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의 해당 특수 토지 취득 여부는 공익성의 존재 여부[5]에 따라 결정 되며, 민감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특수토지의 정부 취득과 동시에 민감 토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4)농지

배타적으로 농업에 사용되거나 주 목적이 일정한 종류의 농업에 쓰이는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는 먼저 외국인이 아닌 자에게 공개시장을 통해 양도되어야 하며, 오직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 장관의 재량에 따라 본 양도조건이 면제될 수 있다.

(5)OIO의 동의 취득 절차

OIO는 각료(Minister of the Crown)의 결정권을 위임 받아, 외국인의 투자관련 경험, 인격(good character), 이민법 상 비자나 출입허가 가능 여부[6](범죄기록, 이민기록, 국가보안관련 문제 등), 금전적 채무 상태 등을 고려해 외국인의 관련 자산의 거래 및 취득에 동의를 한다. 민감 토지 관련 거래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OIO가 추가적으로 투자자의 내국인 지위 여부 (또는 무기한 거주의사 및 비자 등 허가 신청 여부)와 관련 장관의 판단한 투자에 따른 향후 혜택 (5헥타르이상 비도시 지역 투자의 경우, 상당하고, 인식 가능한(substantial and identifiable) 혜택의 발생 유무) 여부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상세한 계획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의 면제에 관한 사항들은 해외투자규정

5) 구체적으로. 뉴질랜드인의 해당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해당 토지와 인접 토지와의 관계, 향후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6)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 §§ 15-16.

(Overseas Investment Regulations 2005)에서 확인 가능하다.[7] 민감토지취득에 대한 동의는 일반적으로 3-4개월, 기타 사업자산취득의 경우, 2-3개월이 소요되며,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OIO는 거래 및 취득에 대한 동의뿐 아니라, 향후 동의에 대한 조건의 부과, 변경 및 추가, 취소도 가능하며, 허가 이후에 일반적으로 5년 이내의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투자의 경제적 요소, 일자리 창출 및 보전 효과, 새로운 사업 및 기술의 도입, 수출 증대, 서비스/제품의 효율성 또는 경쟁력 향상, 향후 개발을 목적으로 한 다른 외국투자의 가능성, 뉴질랜드 주요제품의 가공산업 증대, 민감 토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관리에 대한 이점 등 투자에 따른 뉴질랜드의 향후 혜택[8]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러한 혜택은 자국의 자원보호 측면에서도 평가되는데, 투자에 역사유산, 동식물, 환경 보호에 관한 적절한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일반인에게 토지로의 적절한 접근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도 고려된다. 향후 혜택 외의 평가요소로는 해당 외국인이 뉴질랜드가 관계 개선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의 중요(key) 산업의 주요(key) 인물인지 여부, 동의신청의 거절이 향후 뉴질랜드의 해외, 무역 및 국제관계 이미지에 미칠 악영향의 가능성, 또는 해당 거절이 국제의무의 위반으로 귀결될 가능성 등이 고려된다. 또한, 해외투자자가 동의의 결과로 다른 상당량의 투자를 수행할지 여부, 동의가 정부정책에 미칠 영향, 뉴질랜드인의 해당 사업에의 참여나 감독 범주 등도 총체적으로 고려된다.

해외투자법에서 요구하는 동의를 취득하지 않고 민감토지를 거래하거나, 해당법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회피[9]하는 내용의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12개월의 징역(개인)이나 최대 NZ$300,000 벌금형(개인/회사)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의 위반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처분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 3.회사의 설립 형태

### 가. 개요

뉴질랜드에서 설립 가능한 회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 조합(partnership), 합자회사, 합작투자의 형태 등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뉴질랜드의 회사법(Companies Act 1993)은 뉴질랜드에서 가능한 사업 구조의 형태를 구분하며, 해당 형태에 따라 조합법(Partnerships Act 1908), 합자회사법

---

7) http://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applications/technical-resources/exemptions-schedule3 참조.

8)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 17.

9) 의도적으로나 부주의하게 거짓 또는 호도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규제기관에 자료를 누락시킨 경우 등.

(Limited Partnerships Act 2008), 신탁관리인법(Trustee Act 1956) 등이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사업의 합병이나 양수에 관해서는 상법(Commerce Act 1986)의 사업규정(regulations affecting business) 부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 주식에 상장되었거나 50명이상의 주주를 보유한 비상장 회사의 경우, Takeovers Code가 적용될 수 있어 그 요건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

다. 회사 설립의 주요 형태

(1) 단독 거래자(sole trader)

단독 거래자는 본인이나 사업소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개인을 지칭한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유동성(liquidity)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사업을 위한 운영구조로 적합하다. 사업소득은 개인의 기타 소득과 함께 단독 거래자의 개인소득신고에 포함되고, 개인과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단독 거래자에 의한 세금손실은 무기한 이월되어 향후 순소득과 상쇄될 수 있다. 단독 거래는 개별적인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연관된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대해 단독 거래자 본인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나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은 회사와의 거래를 선호한다는 점, 회계적으로 개인 또는 사업 간 자산이나 법적 책임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점, 사업체의 공유가 어렵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단독거래자의 경우 사업상의 채무에 대해 일반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개인자산담보법(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의 도입 이후, 단독거래자의 자산에 대한 일반담보(general security) 설정이 비교적 간단해졌다.

(2) 회사(Company)

다른 사업 구조와는 달리 개별적인 법인체로서 고유의 권한과 의무를 지니며, 영구존속이 가능하다. 다른 사업 구조에 비해 법인설립과 행정업무 절차가 복잡하지만, 회사가 부채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유한책임의 개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10]. 자본 구조의 융통성 역시 회사구조의 장점으로 꼽힌다. 주주의 배당금 및 회사 통제에 대한 권한 변경, 폭 넓은 주주기반을 생성하기 위한 추가 지분의 발행 및 그로 인한 회사 규모의 확장, 법적으로 이사나 주주의 퇴직이나 사망으로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소유와 경영의 용이한 분리, 구조 변화 없이 회사통제나 소유권 변화 가능한 점 등이 위에서 언급한 융통성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을 통한 법인의 설립 및 행정처리로 절차적 부담이 많이 경감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다양한 규정[11]에 따른 높은 compliance 비용, 회사 이사들의 개별적 의무사항이나 불만족스러운 소수 주주들과의 문제점 등이 단점으로 예시될 수 있다. 또한 창업자와 이사회 간의 회사 또는 주주 이익을 두고 생기는 갈등이 대표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

10) 규모가 작은 회사 일수록, 자금을 차용하거나 부지를 임대했을 경우 주주나 이사가 개인적인 보증을 요구 받을 수 있다.

11) 주로 회사법(Companies Act 1993) 기준.

뉴질랜드는 과세 특례를 적용 받는 두 가지 부류의 회사 형태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한정회사(qualifying company)의 경우,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운영되나, partnership(조합)과 비슷한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다. 한정회사(qualifying company)는 자연인, 신탁의 관리자, 또는 한정회사 자체인 주주로만 이루어진 총 주주 수 5명 이내의 회사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은 이사와 다수 주주의 한정회사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각 주주들이 각자의 회사지분에 따른 소득세에 법적 책임을 지기로 동의해야만 등록이 유효하다.

또한, one class of share를 소유한 한정회사에 한해, 주주 및 이사들의 결의로 LAQC(loss attributing qualifying company)로 전환할 수 있다[12]. 이를 통해 회사는 세금손실을 주주들에게 각자의 이익비율에 따라 이양할 수 있다. 보통 이양은 강제적이고, 이월은 가능하지 않다. 한정회사와 LAQC의 단점은 전환을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회사 수익잉여금(revenue reserve)의 33%), 주주가 가중된 소득세 책임을 지고 주주변동 모니터링에 compliance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3)Partnership(조합)

조합법(Partnerships Act 1908)에 따르면, Partnership(조합)은 수익에 대한 공동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자간의 관계이며, 그 해당 여부는 문서상 표현보다 주로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으며, 절차상으로는 동업자간에 조합계약(partnership agreement)[13]이 체결되어야 한다. Partnership(조합)은 독립적인 법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위한 등록도 필요 없고, 관계를 공식화하기 위한 서면조건도 요구되지 않아 행정비용이 적게 들고 유연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Partner들은 개인적으로(personally) 조합의 부채와 손실에 법적 책임을 진다.

(4)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의 구조는 델라웨어 및 호주에서 운영되는 limited partnership과 유사하며 합자회사법(Limited Partnerships Act 2008)에 의해, 보다 유연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뉴질랜드의 벤처 캐피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다른 사업구조보다 높은 기밀성이 특징으로, 등록된 limited partner들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비밀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단, general partner의 신상은 공개됨). Limited partner 들이 개별적으로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할 필요가 있지만, 회사 정관과는 달리, 위 서류가 기업등록처에 등록되지도, 일반에게 공개되지도 않는다. 합자회사는 회사(Company)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서 합자회사의 손실과 합자회사에 대한 법적 청구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즉, limited partner 은 합자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수동적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책임이 제한된다. 반면, 합자회사가 부채나 의무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12) Introduction to Company Law, 10 페이지 참조.

13) Partner들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고, 조합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명시한 계약.

general partner (회사 가능)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한편, 조세 면에서는 limited partner들도 합자회사의 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득세 부과와 감면을 받는다. 이는 회사의 capital gain을 조세되지 않은 상태에서 limited partner에게 분배하거나, 세금 손실(tax loss)을 이양하도록(pass-through)하는 장점을 제공한다.[14] 회계보고서 역시 작성 후 등록사무소에 보관하는 의무는 있으나, 기업등록처로의 보고의무는 없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유동성 면에 있어서도, 법령이 제정 중이지만 일반적인 회사보다 규제가 적은 편이며, 잠재적인 사업활동에 대한 특별한 제한도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소들로 인한 낮은 규정준수비용으로 지난 3년간, 특히 투자기금(investment funds) 및 합작투자(joint venture) 부문에서 해외투자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졌다.

(5)거래신탁(trading trust)

신탁 역시 개별적인 법인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 구조는 사업소득의 혜택을 받는 이와 사업자산을 관리 및 소유하는 이를 분리하고자 할 때 주로 고려된다. 거래신탁의 채권자(creditor)는 신탁관리자와의 접촉만 가능하므로, 신탁수익자에게 직접 청구권이 없으며, 신탁의 존재나 수익자의 신상도 제 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문적인(professional) 신탁관리자[15]가 관여된 경우, 투자자는 신탁자산으로 제한된 잠재적 법적 책임에 동의하는 편이다. 그러나 개별 법인체가 아닌 이유로, 신탁관리자가 신탁부채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물게 될 경우를 대비해 배상조항이나 보험을 마련하거나 아예 (유한책임) 회사를 신탁관리자로 지명하기도 한다. 신탁관리인법(Trustee Act 1956)에 의해 신탁관리인에게 높은 수준의 관리기준(standard of care)이 적용되고 신탁수익자에게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배당금 분배보다 융통성이 적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세금 역시 개별 법인체가 아닌 신탁에 과세되지 않고, 신탁수익자나 신탁관리자에게 과세된다. 식탄관리자에 의해 파생된 수입이 발생한 소득연말 6개월 이내에 수익자에게 배분된 수입은'수익자소득'으로 분류되고, 그 외는'신탁관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33% 세율을 적용 받는다. 신탁의 세금과실은 수익자에게 이양되지 않고 오직 신탁의 소득과 상쇄만 가능[16]하다.

(6)합작 투자(unincorporated joint venture)

합작투자는 특정 사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둘 이상의 단체간 계약(arrangement)으로 볼 수 있으며, 개별적인 법인체로 분류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Partnership(조합)과 구분[17]되며, 합작투자 단체 간 관계가 계약에 기반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거래신탁과도 구분된다. 법적으로 합작투자의

14)유한동업자의 세금손실에 대한 청구권은 손실에 대한 해당동업자의 노출 정도에 따라 제한됨.

15)신탁 수혜자로서 어떤 잠재적인 금전의 이익관계가 없는 회계사나 변호인(solicitor).

16)세금 손실을 이월하기 위한 소유권 지속조건은 신탁에 적용되지 않는다.

17)조합법(Partnership Act) s4.

참가자들에게 연대책임을 묻지 않으며 책임의 범위는 투자단체가 동의한 계약 조항의 내용에 따른다. 상호이익의 보호를 위한 충실의무를 제외하고 합작투자 범주 밖에서 참가자 간 경쟁 또한 가능하다. 각 동업자는 개인의 세금신고시에 자기 투자 비례에 따라 합작투자의 소득 또는 과실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과는 달리, 합작투자에 관한 소득세신고는 요구되지 않아 세금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개인 합작투자자들이 세금 정산에 보다 큰 융통성이 부여되기도 한다.

## 4. 조세 제도

### 가. 개요

뉴질랜드 투자 시 부담할 수 있는 조세 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소득세(income tax), 부가혜택세(fringe benefit tax), 거주자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세(resident and non-resident withholding tax, RWT & NRWT), 물품·용역소비세(goods and service tax, GST), 사고보상 부담금(Accident Compensation levies), 수입관세 및 기타 소비세, 지역관공서에 따른 재산세 등이 있다. 추가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차량) 등록세나 토지 관련 세가 있을 수 있으니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 나. 관계 법령

뉴질랜드는 소득세법(Income Tax 2007)을 기본으로 해외소득의 경우, 이중과세협정(Double Tax Agreement), 회사에서 지불된 배당금의 경우, 귀속공제(imputation credit) 등 해당 사항에 따라 개별적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뉴질랜드 거주자에 한해, 일정 자산운용객체와 해외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조세혜택도 마련해 놓고 있다. 비거주자는 NRWT로 불리는 원천징수율의 적용을 받으며, 해외투자자공제(Foreign Investor Tax Credit)제도를 통해 제한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다. 소득세 관련 주요 사항

거주여부: 소득세의 경우, 크게 납세자의 뉴질랜드 거주 여부와 수입 원천(source)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데,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 발생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되, 해외로 지불된 세금에 대하여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는 뉴질랜드 원천 수입에만 과세되며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greement) 적용에 따라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 개인은 12개월 이내에 183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영구거주지를 보유한 사람이 거주자로 분류되고,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주된 사무소(head office)가 있고, 경영/통제 본부 역시 뉴질랜드에 있는 회사가 거주자로 분류된다.

수입원천: 회사는 조세객체로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2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인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5-33% 범위 내의 세율에 따라 급여, 임금, 상여금, 그 외 고용혜택, partnership 수입(partnership income), 투자 소득 등에 과세를 받는다. 개인의 급여, 임금에 대한 소득세는 PAYE(Pay As You Earn)을

통해 원천징수된다. =회사의 순소득(net income)금액은 일반적으로 회계이익·손실과 일치하지만, 수입·지출의 인식(recognition) 시기나 악성 부채 상황, 예비금(reserves)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되기도 한다[18].

Capital Gain 과세: 기본적으로 뉴질랜드는 Capital Gain에 대해 비과세 정책을 갖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동산(주식 포함)의 매각은 일부의 경우 소득세를 적용받기도 한다.[19]

표1-1. (사고보상 부담금을 제외한) 주요 소득세율

| | | |
|---|---|---|
| 개인 | 10.5%<br>17.5%<br>30%<br>33% | -NZ$14,000<br>14,001 – 48,000<br>48,001 – 70,000<br>70,001 – |
| 신탁 | 33% | 일부는 45% |
| 회사 | 28% | |

해외소득 공제: 뉴질랜드 거주자의 해외소득과 관련해 거주자는 일정의 제한을 두고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으며, 뉴질랜드 자체에서 30개국 이상의 국가와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greement)에 따른 혜택은 별개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세금손실: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뉴질랜드 지사가 세금 손실을 입을 경우, 일정 수준의 주주가 지속(a certain level of shareholder continuity, 일반적으로 49%)되는 한, 세금손실이 (무기한으로) 이월되어 향후 순이익에서 상쇄될 수 있다. 그룹 회사의 경우, 공동 소유권의 유지(일반적으로 66%)가 조건이 되기도 한다. 개인이나 신탁(trust)의 경우에도 손실은 이월될 수 있지만, 사실상 고정되어[20] 타 독립체들과는 공유될 수 없다.

배당금 과세: 거주 회사에서 거주자에게 지불된 배당금에 대한 조세 대부분은 주주에게 과세 가능하다. 하지만, 전액 출자된(wholly-owned) 그룹 내 거주 회사들 간에 지불된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조세가 면제되는 대신 다른 관련 조건이 적용된다. 특히, 동일 수입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즉, 회사와 주주에 의해 회사 소득이 배당금으로 배분될 때)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에서만 사용되는 귀속공제(imputation credit)[21]가 회사 배당금 (거주 여부 관련 없음)에 추가(attach)될

18)Doing Business in New Zealand, Chapman Tripp, 17페이지 참조.

19)예를 들어, 초기 구매의 주 목적이 이익을 위한 재매각인 경우.

20)Doing Business in New Zealand, Chapman Tripp, 17페이지 참조.

21)호주의 경우, franking system; 영국의 경우, ACT (Advanced Corporate Tax)는 1999년에 소멸되었고, 배당금의 세금공제는 계속 가능하지만, 더 이상 세금 공제액이 회사의 납세액을 나타내지 못한다. 귀속공제는 각 세금연도 기준(전년도 4월1일에서 금년 3월 31일)으로 첨부가능 하다.

수 있다.

배당금의 귀속공제: 귀속공제금은 회사가 납세하는 NZ$1마다 NZ$1씩 부여되는데, 이 거주 주주들이 받는 귀속공제금은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포함한 조세금액과 상쇄된다. 결과적으로, 귀속공제금이 회사의 납세액을 대표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배당금이 귀속 최대 비율(현금배당금의 28/72)[22]에 따라 완전히 귀속 공제될 경우, 공제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경감되지만, 공제되지 못한 뉴질랜드 거주주주들의 배당금은 33%의 거주자 원천징수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23].

PIEs(자산운용객체) 조세혜택: 광범위한 투자임에도 회사나 단위형 투자신탁(unit trust)에 대한 투자가 20%를 넘지 않을 때, 뉴질랜드 거주자인 해당 투자객체는 자산운용객체(Portfolio Investments Entities, "PIEs")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예외 조항 있음). PIE는 거주회사에서 주식의 매도로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며, 이는 승인된 호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호주회사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일반 회사와는 달리, PIE나 투자자 중 한 곳에 한 번만 수입이 과세된다. 개인의 최대 PIE 과세율은 28%이며, 현재 체계는 비거주 투자자의 PIE를 독려하여 수입이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 비거주 투자자에게 해당하는 소득에 PIE의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NWRT): NRWT로 불리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은 크게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은 국가와 타국가 출신에 따라 나뉘어 매겨진다. 협정국가 출신 비거주자는 원천대상(dividends, interest, royalty, etc.)에 따라 10-15%(배당금은 0-15%)의 세율을 적용 받고, 타 국가의 경우, 최소 15%의 일괄요율[24]을 적용 받는다. 또한, 비거주자 투자자에 대해 뉴질랜드는 해외투자자공제(Foreign Investor Tax Credit, FITC)제도를 통해 거주회사가 완전히 귀속공제된 배당금을 지불할 경우, 비거주자 주주의 세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공제제도는 거주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불하는 추가배당금(supplementary dividend)의 자금으로만 조달 가능한 공제액을 제공함으로써 비거주자 주주가 배당금 수혜 시, 거주자 주주와 비교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no less beneficial)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 라. 기타 세금 관련 주요 사항

15%의 물품·용역소비세가 뉴질랜드에서 공급되는 대부분의 물품 및 용역에 부과되며, 무과실의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을 위하여 사고보상 부담금(Accident Compensation levies)이 모든 고용주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수입관세 및 기타 소비세, 지역관공서에 따른 재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다.

---

22)예를 들어, 매 $72의 배당금마다 $28의 귀속공제가 첨부가 가능하다. (비율 상으로 배당금 현금가치 대비 38.88%). 2007년 당시, 33/67 비율에서, 2010년 30/70 비율, 그리고 현재의 비율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23)Doing Business in New Zealand, Chapman Tripp, 17페이지, http://www.ird.govt.nz/business-income-tax/imputation/imputation-basics/

24)배당금이 최대 귀속공제 될 경우, 아니면 30%

## 5. 환경관리법 (Resource Management Act 1991)

### 가. 개요 및 관련 법령

뉴질랜드의 환경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은 자원개발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해외투자제도뿐 아니라, 뉴질랜드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시에 환경관리법에 대한 고려 및 분석 또한 필요하다. 특히, 환경관리법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나. 주요 내용

환경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모든 행위에서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경감, 회피, 개선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당국(regional council or territorial authorities)은 공시된 법정계획문서(statutory planning)를 통해 자원개발을 규제하며, 해당 사항에 따라 자원동의(resource consent)[25]에 관한 절차가 요구되기도 한다. 주로 지구(district) 계획은 구역(zone)화를 통해 토지 관련 사용을 통제하며, 지역(regional) 계획은 물 사용과 오염물 방출 관련 행위를 규제한다. 자원동의의 신청은 환경계획법에서 명시한 조항에 따라 행위의 환경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comprehensive)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행위 종류에 따라 공지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 중 일반적으로 공지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지나 반대를 표명할 수 있고 당국의 동의가 내려진 경우에도 누구나 환경법원(Environment Court)에 항소할 수 있다. 환경법원은 이밖에 법정계획의 변경, 환경계획법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관할한다. 자원동의와 관련된 위반은 일반적으로 임원(senior manager)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계획법은 자원 사용자의 일회성사건에 의한 해로운 환경효과는 해당 사용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전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해로운 효과에 대해 현 소유주나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 또한 마련해놓았다. 특히, 형사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을 부여하고, 양벌책임을 부과할 뿐 아니라 징역이나 최대 NZ$600,000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해당 임원은 기업체의 해당 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가 아닌,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처벌된다. 만약, 새 토지개발이 새로운 간접자본(infrastructure)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위한 공공 비용에 대한 분담금(financial contribution)[26]이 동의조건으로 요구될 수도 있다. 또한, 환경계획법은 마오리 족의 토지, 물, 성지(waahi tapu), 보물(taonga)과 관련된 문화 및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침도 마련해놓고 있다.

---

25) 토지 사용, 분필, 물 사용, 배출허용(land use, subdivision, water permit, costal permit) 등

26) 일부는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2)에 따라 개발 분담금(development contribution)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구나 지역위원회에서 행정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고, 사실상 자원개발자가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다.

## 6. 부동산 구입 관련 규제

### 가. 개요 및 관련 법령

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토지양도법(Land Transfer Act 1962)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마오리족의 토지 귀속 권한에 관한 와이탕이 조약에 의한 수용 권고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나. 일반적인 토지 거래 방법

뉴질랜드의 토지는 토렌스 토지 등록 시스템(Torrens land registration system)에 따라 소유권(title)을 등록하며, 이를 정부(the Crown)가 보장한다. 토지양도법(Land Transfer Act 1962)에 따라 단일 소유권, 전자등록, 영구부착물의 토지귀속[27] 등을 시행해왔다. 현재 거의 모든 사유지가 해당 시스템에 따라 규모, 위치, 소유주, 관련 권리(토지 양도, 모기지, 지역권 등)와 함께 등록되어 있다. 개별적으로 마오리 토지 법원에서도 관련 기록을 보유한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의 토지 구매는 비교적 단순하며 신뢰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토지 매매 계약은 거래당사자들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 계약만이 유효하다. 부동산 대리인에 대한 판매자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4%(최대 NZ$250,000까지, 이후 물품·용역소비세 추가)로 정해져 있다. 절차상으로 먼저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이 무조건 상태(unconditional)가 되면, 이 보증금은 매도인에게 전달이 된다. 만일 기한 내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서면 공지 후에 양쪽 계약당사자 모두 매도나 매수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불된 보증금은 반환이 된다. 기한 내 조건은 보통 소유권 확인, 건물 조사, 자원관리(resource management) 문제 해결, 자금조달, 임대 여부 등이 있다. 또는 향후 전체 조사(full investigation)를 전제로 한 토지 매매계약 성립도 가능하다.

### 다. 와이탕이 조약에 따른 마오리족의 토지 귀속 권한

정부가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와 체결한 바 있는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 1840)은 토지 매매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본래의 조약은 1840년 성립되었으나, 이는 본래 평화적인 식민지화를 위해서 명목상 만들어 진 것에 불과했다. 점차적인 마오리족 토지로의 침해가 일어나면서, 최근 조약 이행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Waitangi 재판소(Tribunal)을 설립, 해당 재판소에서는 마오리족의 고충안을 듣고 해결을 위해 정부에 마오리 족으로의 토지 귀속 등을 권고 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토지 귀속은 일반적으로 오직 정부나 주 소유의 (또는 주 소유 기업에 소유된) 토지만 가능하며, 사유지는 토지가 특별히 양도(endorse)[28]되지 않는 한 귀속될 수 없다[29]. 만약, 마오리족의 토지 수용 권한이 행사될 경우, 현재 시장가치가 지불된다. 이 같은 청구상황은 늘어나

---

27)현 소유주나 구매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경우

28)일정 종류에 해당하는 정부 객체에 의해 이전에 소유되었던 토지의 경우.

29)Doing Business in New Zealand, Chapman Tripp, 28페이지 참조.

는 추세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권(certificate of title)에 표기된다.

## 7. 고용법

### 가. 개요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에 따른 고용 계약의 체결 및 해고 시 규제, 고용건강안전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최저임금 및 휴직 및 휴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나. 관련 법령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이 일반적인 고용관련 사항에 적용된다. 고용주의 차별행위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3)이 적용될 수 있다. 고용건강안전법(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은 고용주의 사업장 안전에 관한 전반에 적용되지만, 사고에 따른 개인 상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 2001)에 따라 이루어진다.

### 다. 고용 계약의 체결 및 해고 시 규제

인력고용 시, 서면 형태의 고용계약(employment agreement)은 필수이며, 고용주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30]. 직원의 조합(union) 가입은 강제성이 없으나,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에 따라 조합은 작업장에 일정 접근권한을 가질 수 있다. 직원은 부당해직(dismissal)이나 불이익(disadvantage)등 개인적인 고충에 관한 청구권이 있으며, 고용관계법은 고용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조정(mediation)을 장려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고충에 따른 시정방안으로 손실된 월급뿐 아니라, 굴욕감이나 존엄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고용관계법에 따라 종업원이 20명 이하인 고용주는 한해 최대 90일의 시범기간(trial period)를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해직된 고용인은 개인적인 고충에 대한 분쟁을 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차별(discrimination), 성적 또는 인종적인 괴롭힘, 강박 등 고용주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된다. 차별 행위는 고용관계법뿐 아니라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3)에 기반해 금지되는데, 성별, 혼인여부, 종교, 피부색, 인종, 장애, 연령, 가족관계, 성적기호 및 조합활동 여부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 행위에 적용된다. 관련 고충은 고용관계기관(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또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에 접수가 가능하다. 같은 선상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부정적인 영향(adverse effect)를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관련 정보를 해당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선의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일반적으로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원의 해고는 명시된 법적 절차와 공시기간을 따르는 조건하에 정리해고, 위법행위, 성과나 자격미달의 이유로만 가

30) 2011년 7월 1일 이후 해당.

능하게 되어있다. 뉴질랜드 법 상, 정리해고 수당에 대한 법적인 권한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전적으로 관련 고용계약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다. 일반적으로는 해고수당에 대한 권리를 제외시키는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며, 단지 사업이 매각 또는 양도되었을 때 고용관계기관에서 영향 받은 피고용인들에 대해 적절한 정리해고수당을 처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외 사업의 매각이나 양도에 따른 피고용인들이 받는 영향에 대한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31]. 단, 매각이나 합병 등의 거래 시, 고용주는 직원들의 고용관련사항(지속고용 대상과 조건 등)에 대해 새 고용주와 반드시 교섭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라. 고용건강안전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고용건강안전법(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에 따르면, 고용주는 위험물질, 응급절차, 위험관리, 모든 사고발생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모든 실용 가능한(practicable) 수단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업무관련 스트레스 역시 법에 피해(harm)로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주의 고지 및 보장 의무는 일부 방문자에게도 확장 적용된다. 위 사항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노동부에서 청구 처리 및 기소를 맡고 있다. 반면, 뉴질랜드의 개인상해 관련 법은 일부 예시된 상해를 제외하고, 개인상해관련 법적 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 2001)에 기반한 법적 제도를 통해 뉴질랜드 국민, 거주자, 일시적 방문자 모두에게 사고의 작업장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무과실 개인상해에 대해 보상(cover)하고 있다. 보상 내역은 치료 및 재활비용, 소득의 손실, 독립수당(independence allowance), 장례비용 및 사망급부금(death benefit) 등을 포함하며, 제한적으로 정신적 상해를 보상하기도 한다. 무과실 보상제도의 보상금은 고용주들의 추가부담금으로 마련되는데, 납세금액은 고용주의 이전 사고평가(rating)에 따라 정해진다.

마. 최저 임금 및 휴직 및 휴가 제도

2012년 4월 현재,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한 최저교육임금(시간 당 NZ$10.8)을 제외하고, 16세 이상[32]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과세 이전 최저임금은 시간 당 NZ$13.5이다. 뉴질랜드에는 11일의 법적 공휴일이 있고, 휴가법(Holidays Act 2003)에 따라 모든 직원들은 최소 4주의 연간 휴가권한이 있다. 추가로 모든 직원들은 연간 5일의 유급병가와 가까운 가족사망 시 유급의 사별휴가 권한도 갖고 있다. 병가는 최대 20일까지 누적이 가능하며, 이 역시 계약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하다. 6개월 연속근무자에 한해 최대 14주의 출산휴가가 가능하며, 각자의 고용직에서 12개월 연속 근무한 부부는 최대 52주의 양육휴가를 공유할 수 있다. 이때 고용주에 의한 유급의 양육휴가 권한은 법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지만, 주된 양육자(primary caregiver)의 경우, 최대 주당 NZ$458.82[33]의 정부보조 유급양육휴가를 14주까지 받을 수 있다.

---

31)세탁소(cleaner)나 음식공급업(food cater)과 같은 취약종사자(vulnerable employees)들은 사업의 매각이나 양도 시, 동일한 조항과 조건으로 새로운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32)16세 이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적 최저임금은 마련되어있지 않다.

33)평균 주급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으로 산정.

## 8. 공정거래 이슈 (Fair Trade - 합병 또는 주식 인수 시 반독점 규제 여부)

### 가. 개요 및 관련 법령

뉴질랜드의 경쟁관련 규제는 상법(Commerce Act 1986)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법령은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갖는 기업 결합(Part III) 및 거래상의 특정한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기업간의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Part II)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상법(Commerce Act 1986)은 기업 결합 규제, 거래상의 금지행위, 위법한 가격 통제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호주무역행위법(Australian Trade Practices Act 1974)과 광범위하게 일치시켜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 나. 기업 결합 규제

기업 결합 규제에 의해 사업 취득을 규제 또는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절차상으로 먼저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해당 자산의 매수시와 비매수시 시장 상황을 비교하여, 남은 회사 간의 조직화(coordination)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시장상황이 변화할 경우, 또 그로 인해 일방적(unilateral)이거나 조직화된(coordinated) 시장지배력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이나 주식매입이 시장경쟁을 상당량 저해할 것으로 판단해 이를 금지한다. 이와 같은 판단을 위해, 상업 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매각이 진행될 경우, 제품이나 용역의 질이 하락하거나 가격이 상승하는지 주시함과 동시에 합병하는 객체의 시장점유율, 새로운 객체의 시장 진입 가능성, 합병 객체와 공급·구매자간의 관계,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한 시장의 특이성을 관찰할 의무가 있다.

특히, 수평 결합의 경우, 두 가지 세이프하버(safe harbor) 규정이 마련되어있는데, 시장 내 가장 큰 규모 세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70% 미만이며 합병된 객체의 시장점유율이 40% 미만[34]이거나, 20%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경쟁 저하를 이유로) 사업취득을 금지하지 않는다. 또한, 세이프하버 규정에 속하지 않는 매수일지라도, 투자자는 상업 위원회에 경쟁을 상당히 저해하지 않는다는 증명(clearance)이나 경쟁의 저해효과보다 거래에 따른 공공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매수의 승인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상법을 위반한 매수의 경우, 개인에게 최대 NZ$500,000의 벌금, 회사에게 NZ$5M의 벌금과 명시된 자산이나 주식의 투자회수(divestment)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 다.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회사의 공모(collusion)나 일방적인 불공정 거래행위 역시 제한된다(공공 이익을 위한 개별적인 승인 건 제외). 시장경쟁을 상당량 저해하려는 목적 또는 효과가 있는 계약, 가격 및 시장점유율의 담합,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사간 집단 보이콧 등이 담합행위(collusive practices)에 해당하며, 재

34)회사 및 관련(interconnected 또는 associated)인을 one head로 간주.

판매 가격 유지를 위한 담합, 시장 진입 방해 또는 시장 퇴출 행위 등 경쟁을 저하시키는 목적으로 상당 수준의 시장권력을 이용한 경우 일방 행위(unilateral practices)에 해당한다. 위반 시, 개인의 경우 최대 NZ$500,000의 벌금이, 회사의 경우 위반으로 취한 상업적 이익 가치의 3배, 관련 법인을 포함한 법인 총매출량(turnover)의 10%, NZ$10M 중 가장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한다.

# Ⅲ. 뉴질랜드 자원 투자 현황 및 관계 법령

## 1. 자원개발 현황

### 가. 석유

(1)약 5억 3천만배럴[35] 가량의 추정매장량이 보고된 바 있는 뉴질랜드의 원유 및 콘덴세이트는 최근 개발된 Tui 유전의 활발한 생산으로 수출이 수입량의 70%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전반적인 생산이 감소추세에 들어섰고, 2011년 당시 한해 동안 1700만배럴 가량이 생산되었다. 현재는 Tui 이후에 개발된 Maari유전이 생산량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2)뉴질랜드는 국내생산의 고품질 원유(crude oil)는 주로 수출을 하고, 대부분 중동지역에서 수입한 석유로 국내 수요[36]를 충당하고 있다. 현재 석유는 주로 뉴질랜드 북섬 서쪽해안에 위치한 Taranaki 유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인근 심해의 국경지역은 아직까지 탐사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근거로 뉴질랜드 원유의 잠재매장량을 200억 배럴까지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3)무엇보다 2011년 한 해 발급된 탐사 및 채굴허가 건수[37]가 이전 해와 비교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사상 최대인 52개의 탐사·개발 정이 시추되어 향후 석유 생산량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천연가스[38] 의 경우 7,318조입방피트(Bcf)[39] 가량의 매장량이 보고된 바 있으며, 연간 순 생산량[40] 142.41조입방피트가 전부 Taranaki 지역에서 생산된다.

### 나. 광물

---

35)매장량은 추정매장량 (P50, 50%의 생산가능성)과 확정매장량 (P90, 90%의 생산가능성)으로 나눠서 보고됨. 뉴질랜드의 원유 및 콘덴세이트 확정매장량은 약 4억 6천만배럴. 2012년 1월 현재 남아있는 추정매장량은 1억 4,800만 배럴, 확정매장량은 8,100만배럴.

36)뉴질랜드의 에너지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석유가 가장 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총 소비량의 77%를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에서 충당(2011년 당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하는 등의 노력으로 뉴질랜드 생산의 석유를 국내소비로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37)2011년 기준, 석유탐사권(Petroleum Exploration Permit, PEP) 3건에 불과하며, 석유prospecting권(PPP)과 석유채굴권(PMP)는 발행 전무. 그 이전 년도의 평균 석유탐사권 허가 건수는 10-20여개.

38)뉴질랜드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관리를 동일한 법령 아래 관리하고 있다.

39)뉴질랜드의 천연가스 확정매장량은 약 6,545 조입방피트. 2012년 1월 현재 남아있는 추정매장량은 1,803 조입방피트, 확정매장량은 1,038조입방피트.

40)점화, 재주입, LPG 추출에 쓰인 양을 제외.

(1)뉴질랜드의 주요 수출 광물은 석탄이다. 석탄은 주로 북섬의 와이카토(Waikato) 지역과 남섬의 웨스트코스트(West Coast) 지역에서 생산된다. 2011년 현재 연간 5백만톤 가량이 생산되는데 이 중 93% 이상이 역청탄(Bituminous)과 반 역청탄(Sub-Bituminous)이다. 고품질의 역청탄은 대부분 인도나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최근 그 생산량이 줄어 2011년 한해 2백만톤 가량이 생산되었다.

(2)지역에 따라 토지의 종류별 석탄함유량이 크게 달라지는데, 전반적으로 매장량의 절반 가량을 뉴질랜드 정부가 소유 하고 있다. 특히, 정결탄(Coking Coal)의 대부분은 정부 소유 하에 있다. 정부소유의 석탄을 사전조사, 탐사, 채굴하기 위해서는 NZP&M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34개의 허가 (28개의 탐사권 포함)와 15개의 이용권(license)이 발행되었으며, 이 중 많은 수가 아직 생산량이 없는 소규모 광산에 발급된 허가권에 해당된다.

(3)이에 반해, 민간 소유의 석탄 자원 탐사나 채굴은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예외로, 민간 소유의 석탄을 사전조사(prospecting)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대부분 이미 탐사가 완료되어있어 허가신청의 빈도는 적은 편이다. 또한, 왕실광물법(Crown Minerals Act)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이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4)결과적으로 할당되어 있지 않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직접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기존의 권한에 합작투자나 “farm-in”방식의 참여가 가능하다. 만약, 왕실에서 완전허가가 되어있는 왕실소유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허가권 소유자(permit holder)와의 상업적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해당 허가권은 지리정보시스템 뷰어(GIS viewer)로 확인이 가능하다.

(5)뉴질랜드 정부는 NZP&M을 운영함과 동시에, 전체 석탄 생산량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Solid Energy의 유일한 주주로서 석탄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Solid Energy는 전체 매장량[41] 80%를 차지하나 에너지 수요에서 선호되지 않았던 갈탄(Lignite)의 액화프로젝트를 최근에 천명하였고 이에 따라 그 생산량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

(6)뉴질랜드 광물 생산에서 비롯된 경제적 가치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금은 연간 약 13톤 (2011년 기준) 이 와이히(Waihi), 코로만델(Coromandel) 등지에서 경암(hard rock)의 형태로, 웨스트코스트(West Coast)와 오타고(Otago) 지역에서 사금(alluvial gold)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금을 제외한 은, 철광석, 알루미늄 등의 광물은 생산량이 전략적 투자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42].

41)2001년 기준 전체 매장량은 86억톤에 이르며, 이 중 갈탄은 72억톤.

42)2011년 기준 연간 은 생산량 약 14톤, 철광석 생산량 약 2백만톤.

## 2.관련 법률

### 가. 개요

뉴질랜드는 영토 안에 있는 정부가 소유한 모든 금, 은, 석유 등의 자원을 '왕실 광물재산(Crown mineral estate)'으로 명명, 해당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해상 12-200마일 이내의 배타적 경제구역(Exclusive Economic Zone)과 확장대륙붕(Extended Continental Shelf) 지역에 속한 광물 또한 정부가 소유·관리하고 있다. 광물의 소유권정보는 뉴질랜드 토지정보기관(Land Information New Zealand, LINZ)에서 담당한다.

뉴질랜드는 정부소유의 광물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과 에너지 보안을 위해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소속의 NZP&M (New Zealand Petroleum and Minerals)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43].

### 나. 왕실광물법(Crown Minerals Act 1991)

왕실(정부)소유광물의 개발과 관련된 광범위한 입법정책과 주요 규제들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1)광물프로그램(Minerals Programme for Minerals): 왕실광물법을 기반으로 광물의 사전조사, 탐사, 채굴허가를 배분하는 절차와 해당 로열티에 관한 정책을 제공하며, 석유와 석유를 제외한 광물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되어있다[44].

(2)왕실광물규정(Crown Minerals Regulations): 석유와 석유를 제외한 광물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 절차와 조건을 따로 제공하며, 사전조사와 탐사 현황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3)왕실광물수수료규정(Crown Minerals (fees) Regulations): 허가권 발급과 관련된 수수료를 관할한다.

(4)디지털데이터제출지침(Digital Data Submission Standards): 사전조사, 탐사, 채굴과정에서 얻은 법적 디지털 정보의 거점(lodgement)을 위한 허용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1일 이후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 다. 대륙붕법(Continental Shelf Act 1964, CSA)

뉴질랜드 대륙붕 탐사 및 개발과 관련된 조항들로, 광물의 사전조사, 채굴, 그리고 복구작업과 관련한 허가에 적용된다. 대륙붕법은 육지로부터 해상 12-200마일까지의 지역과 해저대륙 주변부(continental margin) 바깥가장자리까지의 해저

---

43)왕실광물법에 따른 행정 및 사전조사/탐사/채굴의 허가와 면허 발급, 기술데이터와 관련보고서 관리, 정부조언, 허가 받은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자원개발 투자의 촉진, 로열티와 추가부담금 수집, 마오리족 관련 교섭을 맡고 있다.

44)Mineral Programme for Minerals 2008과 Mineral Programme for Petroleum 2005.

(seabed) 및 심토(subsoil) 지역에 적용된다[45].

높아진 사전조사 기술과 해저탐사 및 채굴 기술의 발달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해저광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NZP&M은 해당 지역보호 및 자국우선개발 등의 이유로 대륙붕 일부 지역[46]에 한해 광물개발과 관련한 허가권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기존 허가권이 우선하는 경우를 제외). 현재 신청불가 기간은 2012년 4월 6일을 기해 6개월이 연장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NZP&M이 해저 황화물(sulphides)에 대한 개발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라. 환경관리 관련 법령

(1)환경관리법(RMA):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가 시행하며 해상 12마일 이내 연안 및 내륙 지역에 적용된다.

(2)해상운송법(Maritime Transport Act 1994): 해상안전국(Maritime Safety Authority)이 시행하며 해상 12마일부터 200마일에 이르는 해상환경관리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항해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조항, 국제해상조약에 대한 의무사항들도 규정되어 있다.

(3)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1993): 해충 및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화물의 승인과 부유플랫폼(floating platform)을 포함한 크래프트(craft) 관리에 관한 의무조항을 제공한다. 생물보안법에 따라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F)는 주로 바다중앙수(mid-ocean water)와의 교환을 통한 선박평형수(ballast water)의 처리를 요구한다. 또한, 농림부는 사업자로 하여금 선체나 수상플랫폼(pontoon)에 생물부착을 통해 해상해충이 유입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선박과 석유굴착장치를 뉴질랜드로 가져오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개발초기단계, 즉, 주로 계획단계에서 농림부와 공조를 통해 생물보안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마. 고용건강안전규정

고용건강안전법(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에 따라 제정된 고용건강안전규정(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Regulations 1999)은 일반적으로 생산설비에서 배급시설까지 석유나 천연가스를 옮기는 관로 관련 작업과 연안 및 내륙의 석유 탐사와 추출을 위한 시설설치 관련 작업에 대한 조항들이 따로 마련되어있다[47]. 고용건강안전규정은 노동부의 고위험부(High Hazards Unit)에서 시행을 주관한다.

---

45)2008년 유엔위원회는 뉴질랜드 해상권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이를 기해 뉴질랜드는 해저 5.7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주권행사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뉴질랜드 육지면적의 22배 넓이에 해당한다.

46)Kermadec과 Colville 보전지역.

47)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Pipelines) Regulations 1999와 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Petroleum Exploration and Extraction) Regulations 1999.

# Ⅳ. 뉴질랜드 자원개발 절차 및 관련 허가

표4-1. 자원개발 절차[48]

표4-2. 석유 개발 절차 및 관련 사항

| 절차 | 경쟁성 | 배타성 | 기간 | 기타사항 |
|---|---|---|---|---|
| 사전조사[49] | 비경쟁적 허가 신청 | 비배타적 허가 | 최대 1년 기한 (기간 연장 없음) | 이후 개발절차에 대한 권한 부여 없음<br>블록오퍼 발급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허가권 발급 제한 가능 |
| 탐사[50] | 경쟁적 입찰 (블록오퍼) | 배타적 허가 | 5년 기한 (탐사 지역 최대 절반에 한해 최장 5년 연장 가능)<br>평가수행만을 위한 최대 4년의 기한 연장 가능 | 슈거로프군도해상보호구역법과 왕실광물법 지정 일부 토지 제외<br>대륙붕 지역에 대한 EEZ 입법안에 따른 환경부 허가 조건 시행 예정<br>탐사허가를 위한 연안활동에 대한 기름누출대응계획 보고 의무 |
| 채굴 | 블록오퍼 (경쟁적) 방식 | 배타적 허가 | 최대 40년 기한 | 탐사허가권 포기를 조건으로 채굴허가권 발급 가능<br>로열티: 5% 종가세나 20% 회계순익로열티 중 큰 금액 부과 (2004년 6월 30일에서 2009년 12월 31일 사이 발견된 자원의 경우, 다른 기준 적용) |
| 현장복구 | 채굴허가권 발급의 조건<br>일반적으로 환경관리법 적용(향후 해상 12마일 이상 떨어진 지역복구는 EEZ 입법안 적용) | | | |

48) 사전조사 전 단계로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 단계에서는 정부나 투자자들에 의해 자원이 발견될 만한 지역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다. NZP&M을 비롯 지질연구기관(GNS Science)이나 대학에서 제공되는 역사·기술적인 자료를 주로 이용한다. 일부 토지는 환경 보존 (석유 개발 시)이나 문화적 이유로 인해 향후 개발이 금지되어 있어, 해당 단계에서 마오리부족(Maori people)과 협의 및 계약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표4-3. 광물 개발 절차 및 관련 사항

| 절차 | 경쟁성 | 배타성 | 기간 | 기타사항 |
|---|---|---|---|---|
| 사전조사 | 비경쟁적/경쟁적 가능(NZP&M 재량) | 배타적/비배타적 가능 (NZP&M 재량) | 2년 기한 (최장 2년 연장 가능) | 규모 제한 없음 |
| 탐사 | 경쟁적 입찰(NAA, 기존 허가권 취소·소멸 토지) 및 선착순 신청 가능 | 배타적 허가 | 5년 기한 (탐사 지역 최대 절반에 한해 최장 5년 연장 가능) 평가수행만을 위한 기한 연장 가능 | 대륙붕이용권은 대륙붕 지역 (해상 12마일 이상 200마일 이하 지역) 탐사에 적용 대륙붕 지역에 대한 EEZ 입법안에 따른 환경부 허가 조건 시행 예정 토지소유주 판단을 위한 토지광물상태보고서 제출 요구 로열티: 연간 생산가치 $200,000 초과의 경우, 납부의무 발생 |
| 채굴 | 경쟁적 입찰 (NAA, 기존 허가권 취소·소멸 토지) 및 선착순 신청 가능 | 배타적 허가 | 일반적으로 20년 (최대 40년 가능) | 대륙붕이용권은 대륙붕 지역 (해상 12마일 이상 200마일 이하 지역) 채굴에 적용 로열티: 특정율과 누적적 종가세 방식 부과 (1996년 광물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허가권 아래 채굴된 광물에는 다른 기준 적용) |
| 현장복구 | 채굴허가권 발급의 조건임 환경관리법과 대륙붕법 적용(향후 해상 12마일 이상 떨어진 지역복구는 EEZ 입법안 적용) | | | |

49) 사전조사의 주 목적은 자원이 포함되었을 만한 토지의 확인이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 지질도 작성, 수작업으로 제한된 표본채취, 항공측량(aerial survey) 등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활동 들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이전에 사전조사가 이뤄졌던 지역의 경우, 단계가 생략될 수 있다.

50) 탐사의 주 목적은 확인된 자원의 평가작업에 있다. 이를 위해 탄성파탐사(seismic survey), 표본채취, 항공자력탐사(aeromagnetic survey), 탐사시추(exploratory drilling), 지질조사 및 이전 데이터의 분석과 보고서 편집작업 등이 수반된다. 이후 발견 자료들을 기반으로 채굴 가능한 양과 경제성을 평가한다. 사전조사가 생략될 경우 (이전에 이미 사전조사가 된 지역이나 높은 수준의 영향조사가 필요할 때), 최초 허가단계로서 신청될 수 있다.

## 1. NZP&M의 허가

가. NZP&M은 제안된 사전조사, 탐사, 채굴의 작업계획과 허가신청자의 경험, 금전 및 기술적 역량을 평가해 허가한다. 단, 거래를 목적으로 하거나 탐사나 채굴작업을 방해하기 위한 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실제 탐사 및 채굴작업을 목적으로 한 신청에 대해서만 허가권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권 보유자가 (“farming-out” 등의 방법으로) 위험분담(risk sharing)을 하거나, 에너지장관의 동의 하에 상거래의 일부로서 허가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가권 지분할당(assignment of permit interest)을 허용하고 있다[51].

나. NZP&M은 허가과정에서 노동부(Department of Labour), 뉴질랜드해상국(Maritime New Zealand), 환경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역사지자문위원회(Historic Places Trust) 등의 연방정부 및 지역 당국과 협의하기도 한다. 석유개발의 경우, 환경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와의 협의도 허가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 필요시, 허가권의 발급뿐 아니라 허가권의 변경이나 연장의 경우에도 마오리족과 교섭을 선행해야 한다. 성공적인 신청결과는 온라인상에 발표된다.

## 2. 환경동의 및 건강안전규정 준수

가. 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역당국으로부터의 환경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용건강안전법(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Act)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 3. 토지접근권한

가. 토지로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한 토지접근권한 역시 필요하다. 마오리족 와히타푸(wahi tapu)토지, 공공보존토지, 건물에 근접한 토지, 농장토지, 4.05헥타르 미만 넓이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미미한 활동일지라도 무조건 토지소유자로부터 접근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마오리토지로의 접근은 활동영향범주와 관계없이 토지소유주[52]와 교섭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토지의 지역 마오리 당국에 10일 전 접근에 대한 공지를 해야 한다. 또한, 지정된 역사적인 장소에 대한 접근도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관련 법[53]의 확인이 필요하다.

나. 효과가 미미한 활동의 경우, 보존 지역을 비롯한 특수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출입에 대한 10일의 공지기간이 필요하다[54]. 그 외 미미한 효과 이상의 탐사나 채굴의 경우,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자나 이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토지에 대한 접근허가를 받아야 한다.

---

51)왕실광물법 §41 참조.

52)마오리토지법원 등기로 확인 가능.

53)역사지법(Historic Places Act 1993)은 역사적 장소(place), 지역(areas), 와히타푸(wahi tapu), 와히타푸 지역(wahi tapu areas)의 4가지 종류의 등기기록을 마련해 놓고 있다.

54)왕실광물법 §2 참조.

## 4. 로열티

가. 채굴된 광물이나 석유는 일정 로열티를 부과 받는데, 산정 기준은 내국세세무부(Inland Revenue Department, IRD)가 선정한다. 또한, 모든 노천굴(opencast) 탄광 종사자와 일부 천연가스 생산자는 생산단위 별로 에너지 자원추가부담금(Energy Resources Levy)을 일정 금액 부과 받는다. 2009-10 당시 뉴질랜드의 로열티 및 추가부담금 납부액은 4억5천만달러를 초과했다.

## 5. 석유 개발 절차 별 관련 사항

### 가. 사전조사

사전조사의 경우 비경쟁적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허가권은 비배타적이며 (한 지역에 다중의 사전조사 허가권이 발급될 수 있음), 이후 탐사 및 채굴허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no subsequent right). 만약 가까운 시기에 블록오퍼(Petroleum Exploration Permit Block Offer) 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조사허가권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사전조사의 규모는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기한은 최대 1년으로 개별적인 연장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나. 탐사

(1)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한해 블록오퍼(Block Offer)의 형태[55]로 경쟁적 입찰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선착순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2012년 2월 9일 정부발표[56]에 따라, 2012년부터는 선착순신청(priority-in-time) 형태의 석유나 가스 탐사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2)블록오퍼: 정식명칭은 석유탐사허가블록오퍼 (Petroleum Exploration Permit Block Offer)로 경쟁적인 입찰을 통해 일정 에이커블록에 대한 탐사나 생산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57]. 정부는 관련 마오리족, 산업 및 이해당사자와 협력을 통해 블록을 지정해야 한다. 절차상으로, 먼저 석유자원을 포함할 만한 토지블록을 정부가 최대한 광범위하게 광고를 한다. 이어 허가신청자들이 작업프로그램을 입찰, 정부가 이를 접수해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한 신청자에게 허가권을 발급한다.

(3)기본적으로 정부는 모든 석유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허가신청에 허가권을 발급할 수 있으나, 슈거로프군도해상보호구역법(Sugar Loaf Islands Marine Protected Area Act 1991)[58]와 왕실광물법Stocktake of Schedule 4에 해당하는

---

55) 블록오퍼방식의 자세한 절차와 조항에 관해 광물프로그램(석유) 5.4.14-5.4.38 참조.

56) http://www.nzpam.govt.nz/cms/news/2012/next-steps-towards-oil-and-gas-exploration 참조.

57) 광물프로그램(석유) 5.2.1-5.2.17 참조.

58) 광물프로그램(석유) 챕터 4 참조.

토지에 대한 탐사신청은 받지 않는다.

(4)현재 육지에서 해상 12마일 이상 200마일 이하 떨어진 지역에 대해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는 배타적경제구역 및 대륙붕(환경효과)입법안[59]이 통과되었으며, 시행이전까지 잠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5)탐사허가를 위해서는 연안활동에 대한 기름누출대응계획을 뉴질랜드해상국에 보고해야 하며, 농림부(MAF)의 생물보안규정 역시 준수해야 한다. 건강·안전과 관련, 노동부사찰단은 시추지역의 Good Oil Field Practice를 관리하며, 탐사자는 연안작업의 건강·안전 상황을 보증할 수 있는 'safety case'를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6)석유의 탐사허가권은 배타적이며 추후 채굴허가신청을 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허가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기존 탐사허가지역의 최대 절반에 한해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연장을 포함한 탐사기간 내에 평가(appraisal)를 마치지 못한 경우, 평가수행만을 위한 4년의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탐사규모는 NZP&M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다. 채굴

(1)탐사결과 발견된 사항들을 기반으로 채굴작업프로그램과 개발회사의 금전 및 기술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 블록오퍼를 통해 채굴허가권을 발급한다. 따라서, 채굴허가권의 신청은 탐사허가권 보유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2)왕실광물법 23조와 32조에 따라 탐사허가권 보유자는 탐사작업을 한 토지에 한해 탐사허가권을 포기하는 동시에 채굴허가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a right to a subsequent permit). 주요 사항으로 (1) 제한된 기술 및 경제요건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채굴이 가능한 석유자원이 확인되고 기술되었는지 여부, (2) 채굴작업프로그램이 석유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해당지역의 온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지 여부, (3) 허가구역 및 기간이 확인된 자원개발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한다.

(3)미미한 효과 (minor effect) 이상을 가지는 활동에 대한 자원동의신청서는 필요 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석유의 채굴허가권은 배타적이며, 채굴기간은 발견규모와 생산율에 따라 변동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최대 40년이 주어진다. 규모 역시 발견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4)로열티: 2005년 광물프로그램에 따라, 채굴된 석유는 연간 기준으로 순 판매수입(net sales revenue) 5%의 종가세(ad valorem royalty, AVR)나 20%의 회계순익로열티(accounting profit royalty, APR) 중 큰 금액이 로열티로 부과된다. 일반적으로는 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허가상 지급 가능한 로열티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반년을 기준으로 부과되기도 한다. 만약 해당 석유 및 천연가

59)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서 지정한 배타적 경제구역 외부지역에 관한 환경관련 입법안(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Environmental Effects) Bill, EEZ legislation).

스가 2004년 6월 30일과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발견된 자원에 해당한다면, 천연가스는 1%의 종가세를 부과 받고, 석유는 연안의 경우, 최초 누적총소득(cumulative gross) 7억5천만달러, 내륙의 경우, 최초 누적총소득 2억5천만달러에 대해 회계순익로열티 15%가 부과된다.

라. 현장복구

일반적으로 채굴허가권은 해체작업(decommission)을 조건부로 발급된다. 따라서 채굴허가지역은 채굴작업 이후에 환경관리법에 따라 복구되어야 한다. 향후 육지에서 해상 12마일이상 떨어진 지역의 복구는 통과된 EEZ 입법안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지역당국은 현장복구에 대한 보석금(bond)을 요구할 수 있다. 석유가 채굴된 지역의 복구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조물과 플랫폼을 제거하고, 시추된 정을 막는 작업을 수반한다.

## 6.광물 개발 절차 별 관련 사항

가. 사전조사

(1)허가권 할당은 왕실자원법 28조를[60] 기준으로 용인 가능한 작업프로그램을 판단하는데, 해당 조항의 적용방법에 대해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장관은 왕실자원법에 따라 제안된 사전조사가 관련토지의 광물에 대한 기존지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지 여부와 해당토지에 이미 사전조사가 이뤄졌었는지, 사전조사가 아닌 탐사나 채굴과정에 상당한 이익관계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탐사나 채굴을 통한 금전적 이익 가능성이 높을 때, 해당토지에 다른 탐사나 채굴 허가가 신청되어있을 경우, 사전조사는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2)광물의 사전조사 기한은 2년이며, 최대 2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규모는 허가된 사전조사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지는데, 작업프로그램에 신청 가능한 규모에 제한은 없다.

나. 탐사

(1)광물의 탐사허가신청은 기존의 선착순 방식과 경쟁적 입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광물의 경쟁적 입찰 방식은 새입찰가능지역(newly available acreage, NAA)으로 기존 허가권이 소멸이나 취소되었을 경우 입찰이 가능해진 토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방식은 대륙붕이용권(Continental Shelf License) 신청에도 적용된다. 특히 NZP&M가 탐사를 신청한 토지의 소유주를 판단하기 위해 토지광물상태보고서(Land Mineral Status Report)의 제출이 요구된다.

(2)석유와 동일하게 육지에서 해상 12마일 이상 200마일 이하 떨어진 지역에 대해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는 배타적경제구역 및 대륙붕(환경효과)입법안[61]이 통

60)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제한조건은 광물프로그램 2.8, 6.1, 6.2 조항 참조.

과되었으며, 시행이전까지는 대륙붕법(Continental Shelf Act)에 따라 NZP&M이 환경효과를 관리할 예정이다.

(3)광물의 탐사허가권은 배타적이다. 허가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기존 탐사허가지역의 최대 절반에 한해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연장을 포함한 탐사기간 내에 평가(appraisal)을 마치지 못한 경우, 최대 평가수행만을 위한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규모는 허가된 탐사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지는데, 작업프로그램에 신청 가능한 규모의 제한은 없다.

(4)광물 탐사에 따른 로열티 납부 의무는 일반적으로 부여되지 않지만, 연간 생산가치가 $200,000을 초과할 경우, 로열티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다. 채굴

(1)광물의 채굴허가권은 채굴허가권과 대륙붕이용권(CSA license)으로 나뉘어지며, NZP&M에서 탐사발견사항 및 채굴작업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허가권을 발급한다. 허가권의 할당은 탐사와 마찬가지로 선착순 평가와 새입찰가능지역으로 나뉘어 발급된다.

(2)채굴허가권은 배타적이고, 일반적인 채굴허가기간은 20년이나 그 보존량과 광물의 종류, 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40년까지 가능하다. 규모 역시 발견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3)로열티: 채굴된 정부소유의 광물에는 일정 로열티가 부과된다. 현재 2008년 광물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되는 허가권 하에 채굴된 광물은 특정율(specific rate royalty, SRR)과 누적적 종가세(tiered ad valorem, AVR)방식에 따라 로열티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연간 채굴가치나 양을 기준으로 하지만, 허가상 지급 가능한 로열티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반년을 기준으로 부과되기도 한다.

(4)특정율 방식은 불필요한 행정비용 없이 일정 수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저가치 고부피 광물(산업용 암석, 건물석조, 석회석, 및 석탄 등)에 사용된다. 누적적 종가세 방식은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익을 정부가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 판매수입(net sales revenue)이 1.5백만달러 이하일 경우 1%, 초과할 경우 2%로 수입에 따라 단계별로 부과된다.

(5)1996년 광물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된 허가권 하에 채굴된 광물은 연간 1백만달러까지의 순 판매수입은 1%의 종가세(AVR)가 부과된다. 연간 순 판매수입이 1백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1%의 종가세나 5%의 회계순익로열티(APR) 중 큰 금액이 로열티로 부과된다.

라. 현장복구

---

61)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서 지정한 배타적 경제구역 외부지역에 관한 환경관련 입법안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Environmental Effects) Bill, EEZ legislation).

(1)환경자원법이나 대륙붕법에 따른 허가구역의 복구가 필요한데, 향후 육지에서 해상 12마일이상 떨어진 지역의 복구는 통과된 EEZ 입법안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역시 지역당국은 현장복구에 대한 보석금(bond)을 요구할 수 있다. 광물이 채굴된 지역의 복구는 채굴건물의 제거, 토지의 식수작업, 지역 동물군 재구축 작업 등을 포함한다.

별첨1. 참고자료 목차

| 자료 제목 | 출처 | 내용 |
|---|---|---|
| 2011 Doing Business in New Zealand | Chapman Tripp | 세무, 회사설립, 외국인투자, 경쟁법 등 현지 투자 관련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법제를 설명하는 뉴질랜드 현지 로펌 자료 |
| 2012 Doing Business in New Zealand | Buddle Findlay | |
| Guide to Government Management of Petroleum (Flow Chart) | New Zealand Petroleum & minerals | Gas & Oil 과 미네랄 개발 관련 법제 관련하여 전체적인 Flow Chart |
| Guide to Government Management of Minerals and Coal(Flow Chart) | | |
| Minerals Estate | New Zealand Petroleum & minerals | 뉴질랜드 개발 가능 자원 설명 |
| Permits and Land Access | New Zealand Petroleum & minerals | 토지의 미네랄 개발의 필요 인허가 관련 자료 |
| Introduction to New Zealand Coal Resources | New Zealand Petroleum & minerals | 석탄 개발의 필요 인허가 관련 자료 |
| Prospecting and Exploration | New Zealand Petroleum & minerals | Prospecting/Exploration 절차의 필요 인허가 관련 자료 |
| Mining | New Zealand Petroleum & minerals | Extraction/production 절차의 필요 인허가 관련 자료 |
| FAQs | New Zealand Petroleum & minerals | Gas/Oil 및 미네랄 관련 FAQs |
| Petroleum-relevant legislations | New Zealand Petroleum & minerals | Gas 및 Oil 관련 법령 모음집 |
| minerals-relevant legislations | New Zealand Petroleum & minerals | 미네랄 관련 법령 모음집 |